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2
-----------	---

2014년 9월 22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7월 1일, 강감창 의원 외 11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4년 7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4년 9월 22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강감창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규모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이 교통 혼잡을 가중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이 단계별로 10부제, 5부제, 2부제를 시행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계별 실시 기준이 없고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별관리 시설물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를 고려하여 교통수요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차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즉각적인 교통혼잡 완화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시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 시설물에 접해 있는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해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2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4. 7.21 ~ 2014. 7.28

- 제출의견 : 해당사항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원안 수용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혼잡구역”)이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하 “혼잡시설물”) 주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단계별로 10부제, 5부제, 2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도로의 혼잡정도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참고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시장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정 지역을 “혼잡구역”으로 정하거나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혼잡시설물”로 정하여

“연간 60일 범위 내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징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절차 간소화 관련

- 현행 조례는 시설물관리사업자가 교통량 감축계획서 제출 등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고, 목표 달성이 미진하거나 감축계획 수립에 불응하는 경우에 한해서 단계별로(10부제 → 5부제 → 2부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실시 기준이 명확치 않고 일정기간 동안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즉각적인 교통량 감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목표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주차면수 및 이용률과 회전율, 대중교통 이용여건 등을 반영한 표준교통량을 근거로 산정되나

표준교통량 산정과 이에 따른 교통량 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수행에 따라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감축노력 절차 및 단계적 이용제한 명령 절차를 생략하고,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교통혼잡이 극심한 도로에 대해 즉각적인 교통수요관리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인 교통혼잡 감축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시설물주의 자발적인 교통혼잡 완화 노력을 생략하고 시장이 교통혼잡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행정권한의 과도한 남용으로 비취질 우려도 있으며, 승용차 이용에 대한 과도한 억제로 인해 시민의 이동편의가 저해되거나 시설물주의 경제활동이 약화될 수도 있음

#### 다. 종합결론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을 내림에 있어 단계별 시행 과정 등을 생략하고 즉각적인 교통혼잡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으며, 혼잡시설물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시설물주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항이라 판단됨

- 또한 연간 8조 4,144억원<sup>1)</sup>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 서울시의 현 교통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자율적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강제적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행정권한의 과도한 남용, 승용차 이용에 대한 과도한 억제, 시설물주의 경제활동 약화 초래 등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는 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적용시 세심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교통수요관리를 극대화 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sup>2)</sup>

---

1) 2011, 201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조한선 외 2, 한국교통연구원)

2) 주차계획과-11745(2014.09.04.)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 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는 제외한다.

1. 10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11, 21일 운행제한 한다.
2. 5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 6, 11, 16, 21, 26일 운행제한 한다.
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3단계 : 2부제(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관리자의 자발적 교통량 감축 계획에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과 주차장 이용감축을 위한 부설주차장 유료화, 주차요금 인상, 임대주차장 사용폐지, 부설주차장 축소 등과 시설물관리사업자가 직접 개발하여 시장과 협의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목표는 해당 시설물이 발생시키는 표준교통량(차량이용을 제한받지 않은 환경에서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 기준 10퍼센트 이상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3항에서 해당 시설물이 발생시키는 표준교통량은 시설물의 용도, 규모, 주차면수 및 이용율과 회전율, 대중교통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3. 2부제 :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이하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제한,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